

A STUDY 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COMPUTERIZATION OF LIBRARY WORK FOR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Hong Soon Young*

We have come to the time when we no longer ask why we computerize, but we need to concentrate on how to effectively accomplish the task. Application of computers has been very active in many fields in Korea during the last few years. And yet libraries are rather slow in taking advantage of computers most likely due to the lack of adequate funds and proper understanding of administrators, but also it seems that the majority of librarians are not quite prepared to adopt i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various aspects of computerization of library work, mainly for library administrators and librarians; although they need not understand the electronical and technical aspects of computers, but they should prepare themselves enough at least to be able to make proper requests to computer specialists in relation to what they want to accomplish with computers in order to improve the work of the library.

In preparing this paper, not only successful cases of computer application which had been carried out in many libraries of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studied, but also various reasons for failure have

*Chief librarian, Assistant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been reviewed in order not to make the same mistakes. The paper covers those areas of library work where computers can be applied, such as feasibility, cost effectivenes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some other aspects of computerization.

As a conclusion, two viewpoints need to be discussed. First, each library should work cooperatively with other libraries instead of trying to develop its own computer programs, since we cannot afford to waste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as well as time. Computer applicable library work can be divided and assumed by certain libraries with responsibility to develop turn-key systems applicable to Korean university libraries. In order to carry out this task, there should be complete financial assistance from government, and in turn those libraries should be required to offer assistance to any other interested libraries in Korea.

Secondly, library school curriculum should offer such courses where future librarians can learn decision making,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ndependent thinking in addition to traditional courses. Future librarians as well as those who are already in the profession should prepare themselves to meet the challenge of the professional requirements in order to meet the ever increasing and diverse needs for good quality service generated from the library users.

經部 分類에 대한 小考

玄 英 姮*

<目 次>

- | | |
|---------------------|--------------------------|
| I. 序 言 | 6. 孝經類 외 史部 傳記類 및 子部 儒家類 |
| II. 經部의 展開過程 | 7. 五經總義類 |
| III. 類・屬間의 分類限界 | 8. 四書類 외 子部 儒家類 |
| 1. 易類 외 子部 術數類, 道教類 | 9. 樂類 외 子部 藝術類 |
| 2. 書 類 | 10. 小學類 외 子部 儒家類 |
| 3. 詩 類 | |
| 4. 禮類 외 史部 政書類 典禮之屬 | V. 結 言 |
| 5. 春秋類 | |

I. 序 言

東洋의 傳統的 資料는 東洋學 내지 韓國學 研究에 없어서는 안될 中요한 資料인 것이다. 이들에 대한 分類 方法인 四部分類法은 東洋의 傳統的 學問 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 分野의 研究者라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익숙하기 때문에 現代에 와서도 그의 이용가치는 사뭇 높다 하겠다.

한편 이들 자료를 整理하는 司書의 視覺에 의할때, 종래는 東洋學 내지 韓國學의 단행본 만을 분류해 왔기 때문에 세분적으로 분류하는 복잡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지만 앞으로 도서관 자료를 전산처리 함에 있어서는 이 분야도 술한 연구 논문까지 아울러 주제별 분류가 절실히 물론이다. 따라서 이 경우 東洋學의 세분적인 항목에 대한 분류법의 이해가 선행적인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왕에 엮어진 각종의 다양한 藏書 目錄과 書

* 明知大學校 人文社會大學 圖書館學科 助教授.

目을 두루 섭렵하여야만 효과적으로 분류 처리되는 것이며, 그런 까닭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四部分類法에 대한 研究가 必須의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四部分類法 中 經部에 대하여 그 展開 過程 및 性格을 먼저 살펴 본 다음 同部의 類·屬間의 세분 분류의 한계와 他部 類·屬과의 分類 問題를 深層的으로 研究하여 이 分野의 자료를 정리하는 司書는 물론 文獻奉仕에 종사하는 主題專門 司書에게 一助코자 함이 그 목적이다.

II. 經部의 展開過程

東洋의 전통적 자료에 대한 分類法은 前漢末 劉歆이 만든 「七略」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는 七分法으로서 現在까지 알려진 東洋 最古의 類別目錄이 되며 東洋 分類法의 創始가 되었던 것이다. 이 分類法에서 經部에 관한 것은 六藝略이었다.¹⁾

六藝라는 名稱은 周禮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서 禮, 樂, 射, 御, 書, 數 곧 六種의 學術을 말하며,²⁾ 본시 典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劉向이 六藝라고 쓴 것은 孔子가 刪定한 六經을 말하며, 以後 이것이 主된 學問으로 傳來됨에 따라 六藝와 六經을 같은 말로 混用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後世에 이르기까지 그 用法이 承襲되었다.

六藝略은 易, 書, 詩, 禮, 樂, 春秋등 六經 以外에도 그 當時 經書에 準하는 論語, 孝經 및 六書를 가르치기 위한 小學이 附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分類法은 그 뒤 南北朝의 宋 元徽 元年(473)에 王儉이 편찬한 「七志」에서도 채택되었는데, 역시 七分法으로서 그 중 經部에 관련된 것만을 살펴보면

「一曰 經典志 紀六藝 小學 史記 雜傳」

1) 班固, 「漢書藝文志」總敍(香港: 太平書局, 1963. 影印)

2) 周禮, 地官에 六藝의 名稱이 보이는 바

「以鄉三物教民而資興之 一曰六德 知·仁·聖·義·忠·知 二曰六行 孝·友·睦·姻·任·恤 三曰六藝·禮·樂·射·御·書·數」
云云이 바로 그 것이며, 6種의 學術을 말하는 것이다.

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七略」을 根據하여 六藝를 經典으로 名稱하고, 春秋 끝에 붙였던 史記類를 史記와 雜傳으로 區分하여 따로 설정하는 變更 을 加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한편 四部分類法(이하 四分法이라 略稱함)의 分류체계는 現在 그 内容의一部가 알려지고 있는 것은 晉初에 荀勣이 편찬한 中經新簿라 傳해지고 있으나, 이 四分法의 嘴矢는 그보다도 앞서 「七錄」序³⁾나 또는 隋書經籍志에도

「魏氏大漢 采掇遺亡 藏在秘書中外三閣 魏秘書郎鄭默 始制中經 秘書監荀勣
又因中經更著新簿 分爲四部 總括群書」⁴⁾

라 있듯이, 魏代에 秘書郎 鄭默이 宮中藏書를 整理하여 中經簿라는 藏書目錄을 편찬하였던 때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장서목록은 散逸되었고 그를 根據로 다시 편찬했다는 荀勣의 中經新簿에서 經部에 해당되는 내용은

「甲部 紀六藝及小學 等書」

로 되어 있다. 비록 經部의 명칭은 아직 쓰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七分法에서 經·史·子·集의 四分法으로 옮겨가는 과정임을 注目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그 후 東晉 初에 著作郎 李充이 惠·懷의 亂으로 흩어진 典籍을 蔽集하여 엮은 「晉元帝書目」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후 梁의 晉通年間(520~526)에 阮孝緒가 撰한 七分法의 「七錄」에도 영향을 미쳤으니 經部에 대한 展開過程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經典錄 內篇一

易部 尚書部 詩部 禮部 樂部 春秋部 論語部 孝經部 小學部

術技錄 內篇五

..... 緯譏部.....

3) 阮孝緒, 七錄序(廣弘明集 卷三所收)

「魏晉之世 文籍逾廣 皆藏在秘書中外三閣 魏秘書郎鄭默 刪定舊文 時之論者 謂為朱紫有別 晉領秘書監荀勣 因魏中經 更著新簿 雖分爲十有餘卷 而總以四部別之」

4) 長孫無忌 等撰「隋書」卷三十二, 經籍志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七志」와 비교해보면 經典志에서 史記와 雜傳을 끄집어 내어 合理的으로 따로 紀傳錄의 一門을 新設하고 經典의 緯譏을 術技錄에서 다루는 變更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七略」과 「七志」를 斟酌하여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그 후 經部의 名稱과 性格이 확립된 것은 「隋書經籍志」에 이르러서인데, 그 내용을 살피면⁵⁾

經部

易 書 詩 禮 樂 春秋 孝經 論語 緯譏 小學

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七略」과 비교하여 보면 七略의 六藝略을 經部로 고치고, 内容에 있어서 9種에다 緯譏 1種을 더 추가하여 10種으로 하였으며, 七略의 六藝略 春秋부에 附入된 史記類를 분리하였다. 또 「七錄」과 비교하여 보면 七錄의 經典錄을 經部, 그리고 術技錄의 緯譏을 이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經部는 隋書經籍志에 이르러 그 土臺가 확립되었으며 그 후 古今書錄에서 詁訓類와 經解類가 설정되어 文獻通考經籍考에 이르러 孟子類가 한 類로 신설되기도 하였으며 清代의 四庫全書總目錄(이후 四庫全書라 稱함)에서는 완전히 經部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10種으로 세분 발전하였다.

易類

書類

詩類

禮類 周禮, 儀禮, 禮記, 三禮總義, 通禮, 雜禮書

春秋類

孝經類

五經總義類

四書類

樂 類

小學類 訓詁, 字書, 韻書

5) 前揭書, 卷三十四, 經籍三.

이것이 四部法의 經部로서는 최초로 크게 展開된 內容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東洋의 전통적인 분류법인 四分法 中 經部의 연혁과 그 展開過程을 살펴 보았거니와, 이에 관련하여 經部의 성격을 검토해 보면 經部는 王道를 中心으로 한 經學의 근본 著述과 그에 준하는 著述, 이를 데면 儒敎의 基本 經典인 六經과 그 理念에 準據한 四書 그리고 그 六經 및 四書에로 이끌기 위해 六書를 교육하는 小學類를 함께 둑은 것이라 하겠다. 이런 視角에서 經部의 性格을 特징 짓는다면 四部의 基本이 되는 部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類 · 屬間의 分類한계

1. 易類와 子部 術數類, 道敎類

易類는 六經의 하나로서 “七略”의 六藝略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후 많은 書目에서 명칭이 그대로 불리워지지만 遂初堂 書目 같은 데서는 周易類라 칭하기도 하였다.

易의 分類를 듣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易은 물론 周易 또는 易經으로 불리워지지만 원래 夏代의 連山, 殷代의 歸藏, 周代의 周易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周易만 전해지고 있다. 이는 처음 伏羲氏가 八卦로 分割한 것을 神農氏가 64卦로 나누었고, 周의 文王이 비로서 卦의 辭를 繫하여 易이란 이름이 생긴 뒤, 그 아들 周公이 爻辭를 지음으로서 성립되었다 한다.⁶⁾

易은 陰陽消長의 논리로서 天·地·人 三才之道를 포괄하며 漢學을 遷奉하는 東洋의 哲學이다. 그러나 그 후 이에 陰陽五行說이 合致되고 또 爻象이 道家에 의하여 假借되어 易의 分類가 매우 까다롭게 되었다.

여기서 가름해야 할 것은 經部 易類와 子部 術數類 및 子部 道敎類와 周易外傳 등일 것이다. 즉 儒道의 學問을 위주로 한 것으로서 그 注流論說 및

6) 裴宗鎬 “易經”(中國의 古典 100選, 東亞日報社), pp. 183-184.

篇章研究書등이 모두 經部 易類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子夏易傳十一卷”, “周易鄭康成注 一卷”, “新本鄭氏周易 三卷”, “陸氏易解 一卷”, “周易注 十卷”, “周易正義 十卷”, “周易集解 十七卷”, “周易口訣義 六卷”, “周易舉正 三卷”등이다.

그러나 易學의 한 종류로서 陰陽五行과 結付되어 相生 相剋을 制度化하고 進化의 根源을 궁극적으로 연구하며 著龜, 占候의 手段과 결부되어 吉凶을 推及하고, 人事의 得失을 徵驗한 內容⁷⁾의 것은 마땅히 子部 術數類로 分類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서는 張行成 撰의 易通變 四十卷, 王湜 撰의 易學, 張理 撰의 易象圖說 內篇 三卷 外篇 三卷, 黃道周 撰의 三易洞璣 十六卷, 易林등을 들 수 있다.

道家에서 周易에 爻象을 假借하여 作丹의 뜻을 論한 것⁸⁾은 즉 魏伯陽의 周易參同契와 그의 注釋書인 陳顯微의 周易參同契解, 俞琬의 周易參同契發揮, 陳致虛의 周易參同契分章註, 蔣一彪의 古文參同契集解, 陳北成의 參同契註, 袁仁林의 古文周易參同契註, 劉吳龍의 古參同契註등을 들 수 있으니 이들은 子部 道教類에 분류해야 타당할 것이다.

또한 三墳, 連山, 歸藏등은 古易에 해당되며, 易緯는 周易에 근거하여 未來의 일 또는 吉凶禍福의豫言에 대한 記錄을 緩拾한 秘經이며 圖讖의 類로서 이론 바 周易外傳이 이에 해당된다.⁹⁾ 이에는 河圖, 洛書, 周易乾鑿度 易緯坤靈圖, 易河圖數, 易九厄讖, 易中孚傳, 易通統圖등이 있으니 이들은 雖然是 모두 經部 易類에 분류해야 할 것이나 그 가름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다.

2. 書 類

이 역시 七略의 六藝略에서 비롯되어 分류上 書類 및 尚書類로 명칭되었었다. 이 분야의 分류를 돋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尚書라고도 하

7)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一百八, 子部十八, 術數類一敍

8) 上揭書, 卷一百四十六 子部 五十六 道家類「周易參同契道真義」의 解題 參照

9) 上揭書, 卷六 經部 六 易類 附錄 後敍

고 書經이라고도 불리워 지는데 처음엔 時代名을 합쳐서 虞書, 夏書, 商書, 周書등으로 區別 호칭되던 것을 다시 四代(虞, 夏, 商, 周)를 합쳐 「尚書」라고 부르게 되었다. 尚은 그 韻이 上으로 통해서 上代의 書라는 뜻으로도 尚書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宋代 이 후에는 書經이라고 하였고 현대에 와서도 書經과 尚書 두가지로 불리고 있다.¹⁰⁾

書經은 虞·夏·商·周의 4대의 政事에 대한 記錄으로 亂世에 처한 孔子가 태평성대의 이상적인 치적을 통해서 道를 유출해 낸 것이라 볼 수 있으니, 이는 後代 帝王들의 본보기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인재 등용에 쓰여지는 官試의 代本이 되었다. 즉 본래의 목적은 歷代의 聖王 賢主들의 事蹟 및 理想的인 政事を 들으므로 儒家의 政治에 龜鑑이 되는 聖典으로 삼으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이런 견지에서는 儒家 經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고대 政事의 記錄이라 하여 古代史로 보는 이도 있지만¹¹⁾ 이는 본래의 뜻에 어긋나므로 儒教 經典으로 보아 經部 書類에 분류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尚書, 書經, 書傳은 그 傳義를 뜻하는 것이니, 이러한 書名이 붙여진 것과 함께 이 經의 注疏論說篇, 章研究書 및 書緯들이 이에 分類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例로서 宋 蘇軾 撰의 東坡書傳十三卷, 宋 林之奇 撰의 尚書全解十卷, 宋 鄭伯態 撰의 鄭敷文書說一卷, 宋 毛晃 撰의 禹貢指南四卷, 宋 史浩 撰의 尚書講義二十卷, 宋 呂祖謙 撰의 書說三十五卷, 宋 夏僎 撰의 尚書詳解二十六卷, 宋 傅寅 撰의 禹貢說斷四卷등을 들 수 있다. 書緯에 해당되는 것들은 常書璇璣錄, 尚書緯德攷, 洪範緯尚書中候, 尚書考靈曜, 常書帝命驗, 中候儀明동이 있으니 이들 모두 넓게는 經學의 書類에 分類해야 할 것이다.

3. 詩 類

이는 詩經을 가르키는 것으로 이 역시 七略의 六藝略에서부터 비롯되었으

10) 柳正東 “書經”(上揭書, pp.186)

11) 陳乃乾이 民國 8년(1919)에 편찬한 「南洋中學藏書目」이 그 最初의 것이 되며, 그 分類 體例에 대하여 湯濟滄은 故에서

「書目之編制 亦頗費斟酌 四庫之名 最不妥者為經 尚書記言 春秋記事 皆史也。毛詩為有韻之

며 이에 대한 분류에 도움이 되도록 그 내용을 살펴보면 詩經은 周왕조 건국 초기(BC 1122년경)부터 春秋 중기(BC 570년경)까지의 약 5백년간에 걸쳐 黃河를 중심으로 한 周나라 境域 내에서 불리던 詩歌를 모은 중국 最古의 詩歌集이다.¹²⁾ 詩經은 원래 詩 또는 詩三百으로 불렸으며 經이라는 字가 붙여진 것은 戰國時代 末期로, 그것도 詩와 經을 連稱한 것이 아니고(莊子 天運篇에) 「詩·書·禮·樂·易·春秋는 六經이다」라고 했을 뿐이다. 詩經이라고 連稱한 것은 漢代에 있어 司馬遷의 「史記」儒林傳에서 비롯되었으며, 民間에서 通稱되기는 그 보다도 훨씬 後代인 宋代부터이다.

이는 孔子가 古詩를 刪定하여 311편을 整理한 것으로서 「風」·「雅」·「頌」으로 되어 있는 바, 風은 國風이라고도 하는데 十五國風 즉 15개 諸侯國(周南·召南·邶·鄘·衛·王·鄭·齊·魏·唐·秦·陳·陰·曹·幽等地)에서 불리던 民歌로 이른바 地方의 俗樂으로서 160편으로 되어 있다. 「雅」는 夏字와 音이 비슷하여 古代에는 함께 通用되었다고 하는데, 夏는 禹王이 세웠던 나라 이름으로 黃河지역에서 가장 文化의 中心地가 되었던 곳이며, 그 곳에서 불리던 樂曲에 맞추어 지은 詩歌를 雅라고 하여 國風의 俗樂과 區分하여 正樂으로 삼았다고 한다. 「雅」는 小雅와 大雅로 나뉘어지며 모두 111편이 되나 그 중 題目만 있고 歌辭가 없는 6편을 제외하면 105편이 된다. 小雅는 주로 宴饗樂이고, 大雅는 會朝樂으로 그 作家들은 대개가 當時의 지배계급인 士大夫로 알려지고 있다. 頌은 祭禮나 또는 조상의 頌德의식에서 무용을 곁들인 儀禮樂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셋으로 分류되어 있는데 周頌·魯頌·商頌이 그 것이다. 이 중에서 商頌은 商朝의 後裔들이 있던 宋에서 불리던 詩歌들이다.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詩經은 대개 採詩, 陳詩, 獻詩의 方法으로 수집된 것을 당시의 樂官들이 選定하고 그에 의하여 音律에 맞게 整理되고 편집되었을 것이며, 그 후 孔子가 다시 이것들을 정리한 것이 오늘날의 詩경이라 推定하고 있다. 孔子는 六經 즉 詩·書·易·禮·樂·春秋로서 제자들을

文 三禮亦史之一類]라 云云하였다.

12) 金時俊 “詩經”(上揭書, p.12)

가르치는 教本으로 삼았을 뿐아니라 또한 詩經을 특히 중요시하였으니 그것은 詩가 인간의 감정을 순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典範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論語」無政 頸에 「시3백은 한마디로 말해 그 사유에 사악함이 없다」고 했으며 또 同書「陽貨」頸에서는 「사람이면서 詩經의 周南·召南詩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¹³⁾라고 있듯이 이령듯 孔子는 詩經을 儒家의 典範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詩類가 中國詩學의 元祖인 齊에서 文學으로서 詩에 分類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앞에서도 言及했듯이 본시 孔子가 詩經을 儒家의 典範으로서 삼기 위하여 이를 刪定한 것이기 때문에 單獨的으로 다른 經典들과 分難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이상의 詩經의 内容과 함께 그 종류로서 三家의 詩와 毛詩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좀더 說明하면 秦의 始皇帝 때 焚書坑儒로서 易經을 제외한 모든 經典들이 焚書 또는 散佚되었는데 뒤이어 漢朝가 秦을 멸망시키고 천하에 군림하면서부터 학술사상을 부흥시키고자 하여 천하에 산재한 古典籍을 수집하고 學官을 세우는 한편 전문분야의 학자들을 초빙하여 이들 중 가장 권위있는 대표자를 博士라고 하였다. 당시 詩經으로 博士가 된 사람은 文帝時 魯나라 中培와 燕나라 韓嬰이 있으며 이들의 詩를 세칭 魯詩와 韓詩라 하며, 그 후 景帝時에 또 한 사람의 齊나라 詩經학자가 박사에 선정되었으니 齊나라 사람 輞固로, 이 學派의 詩經을 齊詩라고 한다. 이렇듯 西漢時代에는 魯詩·韓詩·齊詩의 3개 詩經學派가 있었으며 이들은 治學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그후 西漢末에 魯나라 恭王이 그의 궁전을 넓히려고孔子가 살던 옛 집을 혈때 그 집 벽속에서 많은 古典籍이 나왔는데 이들은 西漢時代에 통용되던 문자인 隸書가 아니라 先秦代의 文字로 되어 있었다. 그 중에 詩經도 있었는데 魯나라 사람 毛亨이 이 古文詩經을 연구하니 이것이 毛詩이다. 그후 東漢時代에 이르면서 「毛詩」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지고 또 東漢末 經學의 대가이던 鄭玄이 「毛詩」를 연구하여 箋을 撰述하자 점차 毛詩가 압도하여 기타 3家詩는 점차 쇠퇴하여 가더니 齊詩는 魏代에 魯詩는 西

13) 前揭書, p. 13.

晉代에 韓詩는 北宋初에 소멸되어 現在는 古典籍에 산재 인용되어 그들의
변모를 겨우 窺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는 韩詩外傳이 전해지고 있을 뿐
이다.

이에 대한例로서는 吳璣 撰의 毛詩陸疏廣要二卷, 唐成伯瓊 撰의 毛詩指
說一卷, 宋歐陽修 撢의 毛詩本義十六卷, 宋蘇轍 撢의 詩集傳二十卷, 宋
蔡卞 撢의 毛詩名物解二十卷, 宋王質 撢의 詩總闡二十卷, 宋朱子 撢의
詩集傳八卷, 宋楊簡 撢의 慈湖詩傳二十卷, 宋朱鑑 編의 詩傳遺說六卷,
宋王應麟 撢의 詩考一卷, 元朱公遷 撢의 詩經疏義二十卷, 元梁寅 撢의
詩演義十五卷, 元劉玉汝 撢의 詩續緒十八卷등이 있으며 또한 詩含神霧,
詩推度災, 詩汎歷樞, 詩緯汎歷樞등의 詩緯도 包含되니 모두 經部 詩類로 분
류하여야 할 것이다.

4. 禮類와 史部 政書類 典禮之屬

禮역시 七略의 六藝略에서부터 비롯되나 四庫全書總目에 와서야 비로소
周禮, 儀禮, 禮記, 三禮總義, 通禮, 雜禮書 등 6가지 屬으로 세분되었다. 오
늘날 禮에 대한 관념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성립시키는 규범이란 정도로 생
각하지만 禮를 古代의 禮制로 적은 것이나 균원적으로 소급해 가면 禮는 儒
家사상의 시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祭政일치의 中國원시사회
에 있어서의 생활의 표현, 그것이 禮로서 나타났던 것이므로 禮는 中國古代
사회의 文化的 綜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祭祀儀式에서부터 공동
체의 생존이 필요한 활동 즉 정치, 경제, 법률, 윤리등이 모두 이 禮의 개
념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니 禮는 유가 사상의 시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儒家 經典에서 分離시킬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禮類는 三禮 즉 周禮, 儀禮, 禮記가 主體이니 周禮는 옛날 周官이라 하였는
바 周나라의 王政國家의 行政組織을 規定한 것으로서 禮의 정치적인 면의
전개 즉 祭政一致에서 祭政이 분리하게 됨에 따라 정치적 통치기구의 조직,
官爵의 상하서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漢鄭元注 撢의 周禮注疏 四十二卷, 宋王安石 撢의 周官新義 十六卷, 宋王

昭禹 撰의 周禮詳解 四十卷, 宋 俞庭椿 撰의 周禮復古編 一卷, 宋 葉時 撰의 禮經會元 四卷, 宋 鄭伯謙 撲의 太平經國之書 十一卷, 元 毛應龍 撲의 周官集傳 十六卷 등을 들 수 있으니 이들은 經部 禮類 周禮之屬으로 分類하게 될 것이다.

儀禮는 선비와 諸侯가 지켜야 할 日常의 禮를 다룬 것으로서 관혼상제등 종교 및 습속적인 생활의식에 관한 禮를 기록한 것으로서 宋 張淳 撢의 儀禮識誤 三卷, 宋 李如圭 撢의 儀禮集釋 三十卷, 元 吳澄 撢의 儀禮逸經傳 二卷, 元 放鑑公 撢의 儀禮集說 十七卷, 元 汪克寬 撢의 經禮補逸 九卷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가늠해야 할 것은 冠·婚·喪·祭·饗·聘·覲·卿은 儀禮에 분류하나 一國의 典禮인 吉·凶·賓·軍·嘉·雜(謚法)에 관한 諸典儀는 史部 政書類 典禮之屬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私家의 冠·婚·喪·祭 및 기타 관련된 禮俗은 雜禮之屬에 分類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禮記는 禮 일반에 대한 이론적 반성 및 儀禮의 經文에 대하여 理說과 實際를 說明한 것이다. 이는 魯의 高堂生이 土禮 17편을 전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河間의 獻王은 그가 수집한 많은 古書 가운데서 古禮에 관한 기록 131편을 모아 漢 武帝에게 헌납했으며 이에 다시 禮에 관한 기록을 즉 明堂陰陽記, 孔子三朝記, 王氏史氏記, 樂記 등을 더 얹어 총 214편이 되었다. 그 후 戴德이 214편중 번잡하고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고 85편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곧 大戴禮이며 戴聖은 大戴禮 85편을 다시 정리하여 49편으로 하였는 바 이것을 小戴禮라고 한다. 大戴禮, 小戴禮라는 명칭이 생긴 것은 戴聖이 戴德의 조카였으므로 戴德을 大戴라 하고 戴聖을 小戴라고 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大戴禮는 小戴禮에 비하여 번잡하고 오령이 없어 점차 연구하는 사람이 적어져 小戴禮만이 성행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禮記인 것이다.¹⁴⁾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漢 鄭元 注, 唐 孔穎達 疏 禮記正義 六十三卷, 宋 張慮 撢의 月令解 十二卷, 宋 衛湜 撢의 禮記集說 一百六十卷, 元 吳澄 撢의 禮記纂言 三十六卷, 明 黃道周 撢의 緇衣集傳 四卷 등을 들 수 있으니 즉 禮類 禮記之屬에 해당된다.

14) 李完載 “禮記”(上揭書, pp. 228-230)

三禮總義는 三禮에 대한 總括的인 傳義이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나눌 수가 없는 것으로서 三禮의 이름을 일일이 표하지 않은 그에 대한 총괄적인 해석이다. 이에 대한 예로서는 宋 聶崇義 撰의 三禮圖集注 二十卷, 清朝 萬斯大 撰의 學禮質疑 二卷, 清朝 陸龜其 撰의 讀禮志疑 六卷, 清朝 毛奇齡 撰의 郊社禘祫問 一卷등을 들 수 있다.

通禮는 三禮를 兼한 것, 三禮에 병합시킬 수 없는 것 以外에도 歷代의 禮制를 包括하고 있는 것¹⁵⁾으로서 宋 陳祥道 撰의 禮書一百五十卷, 宋 朱子 撰의 儀禮經傳通解 三十七卷, 清 江永一 撰의 禮書綱目 八十五卷등을 그 例로서 들 수 있다.

雜禮는 家禮, 鄉禮 등의 私家儀注¹⁶⁾에 해당되니 隋書經籍志에서는 公私儀注를 모두 禮類에 넣었으나 四庫全書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歷代 朝廷所制의 國典關係의 典禮¹⁷⁾와 분리시켜 史部 政書類에 分類케 하고 私家 儀注만은 禮類 끝 雜禮에 分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宋 司馬光 撰의 書儀 十卷, 宋 朱子 撰의 家禮 五卷, 明 黃佐 撰의 泰泉鄉禮 七卷, 清 李光地 撰의 朱子禮纂 五卷등을 들 수 있으니 이는 經部 禮類 雜禮之屬으로 分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禮緯는 禮經을 五行說에 입각하여 吉, 凶, 祾, 福을 論한 것이니 이에는 禮含文嘉, 禮稽命徵, 禮斗威儀 등이 해당되며 이들은 外專으로서 禮類 末尾에 붙이게 될 것이다.

5. 春秋類

春秋 역시 七略의 六藝略에서부터 비롯되는 바 分類와 관련하여 그의 內容을 보면, 春秋는 魯나라 陰公 원년(BC 722)에서 魯 哀公 14年(BC 481)까지의 242년간의 魯國을 中心으로 한 列國의 중요한 기사, 특히 國君의 즉위,

15)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二十二 經部 二十二 禮類 通禮之屬 後敍.

16) 上揭書, 卷二十二 經部二十二 禮類四 雜禮之屬 後敍

「案公私儀注 隋志皆附之禮類 今以朝廷制作 事關國典者 隸史部政書類中 其私家儀注 無可附麗 謹彙爲雜禮書一門 附禮類之末」

17) 上揭書, 卷八十二 史部 三十八 政書類二 典禮之屬 後敍

「今以春官所掌 帝制朝章悉在焉」參照

改元, 朝聘, 會盟, 戰爭, 祭祀, 天災등을 극히 간결하게 記錄한 年代記이다. 이러한 점에서 응당 史類에 春秋를 分類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¹⁸⁾ 孔子가 春秋를著述한 원래의 目的是 단순한 기록보다는 윤리적인 도덕 규범에 의거하여 正邪·善惡의 가치 판단을 내리고 褒貶의 必法으로 大義를 천명한 엄정한 是非論斷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는 史書로서의 이용보다는 儒家의 政治·倫理의 教範으로 삼으려는데 있으며, 독특한 春秋의 筆法을 適用시켜 倫常秩序를 宣揚하고 亂臣賊子를 두렵게 하려는孔子의 教訓의 意圖가始終一貫되어 있기 때문에, 漢代以後 經으로 編入되어 聖學의 教科書로 利用되어 왔으나 史部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經部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春秋의 解釋學에는 「穀梁傳」, 「公羊傳」, 「左氏傳」의 春秋三傳이 있는데, 「穀梁傳」은 戰國時代 穀梁赤의 학설로 漢初에 文字化되었다. 이의 特色은 당시의 王朝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특히 君臣의 大義名分과 天子의 절대적인 神聖性을 強調하고, 인간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도 윤리적 규범보다는 法律的인 規範을 중시하여 法家的인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도 받는데, 이 때문에 穀梁傳은 法術을 존중하였던 漢의 宣帝時에 각광을 받아 博士官에列入되었으며 唐·宋時代의 春秋學者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公羊傳」역시 戰國時代 公羊高의 學說을 漢初에 文字로 整理한 것이다, 公羊學은 漢初에 董仲舒에 의해 크게 발전되었으며 後漢 何休에 의해 완성되었다. 公羊學派에 의하면孔子가 春秋를 저술한 것은 단순히 是非論斷 때문이 아니라 장래 興起할 새 王朝를 위해 法制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孔子의 微言이라는 주장이다. 즉 公羊傳은孔子의 大義와 함께 微言을 強調한 것이 큰 특색이라 할 수 있다.¹⁹⁾

「左氏傳」은 春秋時代 魯의 左丘明의 저술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略해서 「左傳」이라고도 하는데, 이 「左傳」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前漢末 古文學派인 劉歆에 의해서 비롯되었으며, 그의 주장에 의해 古文經典의 學官이 설

18) 註11 參照

19) 李成珪 “春秋”(前揭書, pp. 105-106)

치되었을 때 「左傳」도 포함되면서 크게 유행하였다. 「左傳」은 公羊傳의 家族主義 옹호 입장에 비해 國家主義를 중시한다는 특색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公羊傳과 穀梁傳이 大義·微言의 闡明에 시중 일관하는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事件의 背景과 展開 및 그 結果를 보충함으로서 春秋의 간략한 기사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어 春秋의 史書的인 측면을 강조·보충하고 있다. 더욱이 春秋의 記錄이 魯의 哀公 14년에서 끝난 것에 비해 左傳은 哀公 27년까지 言及하고 있어, 이는 처음부터 春秋의 해석을 목적으로 著述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史書로 정립된 것을 劉歆이 春秋의 編年에 맞추어 再構成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²⁰⁾

이와 같이 春秋三傳사이에는 字句의 差異와 함께 그 特徵에 있어서도 多小의 差異는 있으나 三者가 다 같이 春秋의 正經을 土臺로 解釋한 것만은 史實이다. 이외에 春秋四傳하면 胡氏傳이 포함된다. 하여튼 이에는 春秋正經 및 그에 대한 注疏등이 해당되니 그 例로서 晉 杜預 撰의 春秋釋例十五卷, 唐 陸淳 撰의 春秋集傳纂例十卷, 元 李廉 撰의 春秋諸傳會通二十四卷, 宋 王皙 撰의 春秋皇綱論五卷, 宋 孫覺 撰의 春秋經解十三卷, 元 程端學 撰의 春秋本義三十卷, 春秋三傳辨疑二十卷, 元 趙汎 撰의 春秋左氏傳補注十卷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春秋緯에 속하는 것은 春秋漢含, 春秋合誠圖, 春秋保乾圖, 春秋佐助期, 春秋握誠圖, 春秋濕潭巴, 春秋說題辭, 春秋命歷序, 春秋繁露 등이 있으니 春秋末尾에 첨부시키고 經部 春秋類에 分類해야 할 것이다.

6. 孝經類와 史部 傳記類 및 予部 儒家類

孝經은 다른 經과 마찬가지로 六藝略에서 비롯되어 그 후 歷代의 書目에 類門이 설치되었으나 遂初堂書目에서는 論語類에 孟子와 함께 附屬되었으며, 그 후 直齋書錄解題 등 다른 書目에, 다시 孝經의 類門이 설정되어 四庫全書까지 존속되었다.

孝經은 孔子와 그의 제자 會參이 孝에 대하여 問答한 것을 記錄한 것으로

20) 前揭書, 107p.

서 당시 行動의 規範을 이 孝經으로서 제일을 삼았으며, 王道 政治에 있어서 五倫思想에 입각하여 孝가 經으로 편입되었으니 孝經의 正經과 그 注疏論說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한例로서는 唐 元宗明皇帝御註의 孝經正義三卷, 宋 朱子 撰의 孝經刊誤一卷, 元 董鼎 撰의 孝經大義一卷, 元 吳澄 撢의 孝經定本一卷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孝經緯는 孝經을 근거하여 未來의 일 또는 言凶禍福에 대한豫言을 記錄한 것이니 이에는 孝經援神契, 孝經中契, 孝經古秘, 孝經鉤命訣, 孝經內事, 孝經威嬉拒등이 있으며 孝經類에 분류하되 外傳으로 처리하여 末尾에 附入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가름해둘 것은 子部 儒家類와 史部 傳記類와의 분류 한계일 것이다. 즉 孝에 대한 것을 수록한 것으로서 이를테면 清 韓菼奉命撰의 孝經衍義, 우리나라의 高宗朝 朴敦行의 孝說등은 子部 儒家類에 분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孝行 記錄을 담은 것으로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것으로 朴在仁 編의 慕巖孝行錄, 李健榮 等編의 慕菴孝行錄, 成瑛 編의 成侍中孝行錄등은 孝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개인에 대한 記錄이므로 孝經類보다는 史部 傳記類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 五經總義類

五經總義類는 원래 七略에서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隋書經籍志에서 許慎 撢의 「五經異義」以下 諸家の 것을 論語末尾에 附入시켰던 것이다.²¹⁾ 그후 舊唐書志에 비로소 따로이 經解라는 名稱으로 1類가 설정되더니, 明史藝文志에서는 이를 諸經類라 했고, 끝으로 四庫全書에서 五經總義類라 하였다.

五經總義는 經解를 總集한 것으로서 群經의 正文 및 그 註疏를 말함이니 이에 대한例로서 唐 陸元郎 撢의 經典釋文三十卷, 宋 劉敞 撢의 七經小傳三卷, 宋 楊甲 撢의 六經圖六卷, 宋 毛居正 撢의 六經正誤六卷, 宋 岳珂 撢의 刊正九經三傳沿革例一卷, 元 慮朋來 撢의 五經說七卷, 清 吳浩· 撢의 十三經義疑十二卷 등을 들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五經에 極限되는 經解가 아니라 經全體를 包括하고 있으니 오히려 그 名稱이 群

21)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三十三 經部三十三 五經總義類 紹

經總義 또는 總經類라 합이 마땅할 것이다.

8. 四書類와 子部 儒家類

四書類는 처음 七略의 六藝略에는 그 類門이 설정되지 않았고 論語만이 있었다. 四書中 論語類만이 歷代의 書目에 一類門으로 설치되었고 遂初堂 書目에서는 孟子를 論語類에 附入시켰으나, 文獻通考經籍考에서는 孟子도 따로이 一類로서 설치되었다. 그 후 明史藝文志에서야 비로소 四書類로서 名稱되어 四書가 모두 함께 一類로 설정되었으니, 그 以前까지 大學과 中庸은 禮類에 붙여왔으며 四庫全書에서도 四書類라 하여 大學·中庸·論語·孟子를 함께 분류하기에 이르렀다.

四書類는 大學, 中庸, 論語, 孟子의 正經 및 그의 註釋書와 總義가 해당되는데 원래 四書라는 名稱은 없었다. 즉 大學과 中庸은 論語, 孟子와 함께 四書라 하여 詩·書·易의 三經과 더불어 儒家의 基本 典籍으로 손꼽히는 데, 詩·書·易의 三經은 아득히 옛날부터 있어온 名稱이나, 四書는 宋代의 朱子에 이르러 비로소 생겨난 名稱이다.

四書가 생겨난 것은 佛教가 中國에 들어와 널리 보급되면서 儒家의 전통 사상에 일대 충격을 주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²²⁾ 즉 첫째는 儒家經典인 經學이 修己治人の 道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倫理와 王道정치를 重視하는 것임에 반해서 佛教의 經典은 生死의 問題를 밝히는 철학적인 면을 가진 점이고, 둘째는 佛教에 있어서도 中國에서는 특히 禪宗이 성립되어 번잡한 理論을 따질 것 없이 마음을 바르게 가지기만 하면 그대로 부처가 된다는 주장이 風靡함으로써 당시의 대중들이 많이 佛教에 끌리게 되었다. 여기에서 儒家는 자기 반성이 불가피 하였던 것이니, 첫째는 簡明·直截를 추구하는 당시의 교양인들의 氣味에 부응하기 위해서 經典의 간소화가 요구되었고, 둘째로 儒家思想이 經國濟世의 현실 문제만을 關心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깊은 哲學的 原理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時代의 요구에 응하여 생겨난 것이 곧 四書의 出現이라고

22) 李完栽 “大學·中庸”(前揭書, pp. 201-203)

볼 수 있다.²³⁾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大學과 中庸이 본래 「禮記」 49편 중에 실려 있던 것이나, 朱子가 따로 뽑아내어 「論語」「孟子」와 함께 四書라 이름붙이고 儒家의 必讀書로 장려했던 것이다. 앞서 言及했듯이 「禮記」의 한편이었던 大學은 「禮記」에 수록되었던 원래대로의 「大學」이 아니라 朱子가 새로 정리한 것이니, 朱子는 「禮記」의 大學이 錯簡되어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여 그 내용을 지금의 次序로 整理하고 이를 「原本大學」이라고 名命했던 것이다. 朱子는 大學의 내용이 3綱領 8條目을 서술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그 輯次를 經 1장, 傳 10장으로 章句를 정하였다. 8條目은 이 3綱領을 실현하는 次序의 단계로서 8條目에는 각 條目을 說明하는 글 즉 傳이 있는 바, 大學은 經學의 志向處와 學問的 次序를 밝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中庸은 大學과 마찬가지로 「禮記」 중의 1편이었으나 大學보다 앞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 진작부터 단행본으로 나루어진 듯 하다. 즉 漢書藝文志에 「中庸經」 2편이 있고 隋書經籍志에 戴顥의 「中庸傳」 2卷, 梁武帝의 「中庸講疏」 1卷이 실려 있다.

이로서 본다면 中庸에 대한 特別한 관심은 이미 漢代부터 옆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中庸이 본격적으로 闡揚된 것은 역시 宋代에 와서이다. 宋代의 學問의 경향이 哲學的으로 심화되고 儒家 經典가운데서 그러한 哲學的 原理를 簡明에게 밝힌 書籍이 요구됨에 따라 中庸이 크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中庸은 흔히 小周易이라고 불리우며 만치 四書가운데 특히 哲學的 내용이 풍부한 것으로서 天人合一의 경지를 제시하므로 經學의 哲學的 背景을 簡明하게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論語는 孔子와 그 제자들 사이에 주고 받은 記錄이라고 할 수 있으니, 孔子 스스로가 지은 著作은 물론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제자 중에 누가 편찬했느냐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漢書藝文志에 의하면 「論語」란 孔子가 그의 제자와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응답한 말씀과 제자들 간에 서로 말한 것, 그리고 孔子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로 되어 있으며, 또한 「論語」란 孔子의

23) 前揭書.

문인들이孔子가 돌아간 뒤 서로의記錄을 모아서 의논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册名도 「論語」였다는 것이다.

「論語」에는 漢나라 때에 「齊論」, 「魯論」, 「古論」등 세 가지가 있었으나 「齊論」은 22편으로 齊나라 사람들이 전해온 論語, 魯論은 20편으로 魯나라 사람들이 전해온 것, 古論 21편은孔子舊宅의 벽속에서 나온 古文의 論語이다. 이 중 「古論」은 漢代의 孔安國이 訓讀·해석하였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않고, 齊論과 魯論은 각각 傳本이 있어서 이것을 연구하고 전한 학자들이 많다. 漢書藝文志에는 張禹의 論語가 최후에 張侯論으로 나와서 세상에 크게 행하여졌다고 지적되어 있다. 安昌侯 張禹는 전해 받은 魯論에 齊論까지 결하여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魯論에 합해서 이를바 「張侯論」을 이루어 놓았다. 이때부터 齊論은 없어지고 오직 魯論만이 張侯論으로서 세상에 크게 행해지게 된 것이다.²⁴⁾ 論語 역시 四書의 하나로 꼽히게 된 것은 宋代의 程子이후의 일로 이때부터 論語는 성리학의 기본 경전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四書類 아래에는 大學, 中庸, 論語, 孟子등의 각經 및 正經合刻과 그의 註疏가 분류된다. 그 예로서 漢 趙岐 註의 孟子正義 十四卷, 魏 何晏 註의 論語義疏 十卷, 宋 孫奭一 撰의 孟子音義 二卷, 宋 朱子 撰의 四書或問 三十九卷, 宋 眞德秀 撰의 四書集編 二十六卷, 宋 聚立武 撰의 中庸指歸 一卷, 宋 金履祥 撰의 大學疏義 一卷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분류상 限界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은 四書에 대한 衍義類와의 관계이다. 이를테면 宋 朱熹 條句의 中庸朱子異同條句, 明 夏良勝 撰의 中庸衍義, 宋 眞德秀 撰의 大學衍義, 編者未詳의 孟子演義와 같이 四書를 기초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儒家의 學問的인 觀點에서 衍義한 것 즉 朱子學의인 관점에서 크게 釋義한 衍義類는 子部 儒家類에 分類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4) 柳正東 “論語”(前揭書, pp. 198-200)

9. 樂類와 子部 藝術類

樂은 六經의 하나로 그의 分類는 七略의 六藝略에서부터 비롯되었다. 樂은 음악을 순수한 예술보다는 儒家의 教理 體係 중에 포함시켜 禮樂論으로 전개시키고 있어 강한 政治·倫理的 성격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禮樂思想은 古代 儒家思想의 代名詞라고 할 수 있다.²⁵⁾ 그러나 이러한 古代 樂經은 漢以來 일컬어 왔던 五經, 十二經, 十三經에 모두 빠져 있으니, 그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이 그 後 樂篇이 散佚된데서 起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²⁶⁾ 특히 四庫全書에서 보면 모두 後代人의 著作으로서, 宋 陳陽 撰의 樂書 二百卷, 宋 蔡元定 撰의 律呂新書 二卷, 元 慮明來 撰의 瑟譜 六卷, 明 朱載堉 撰의 樂律全書 四十二卷, 明 倪復 撰의 鐘律通考 六卷등을 예로 들 수 있으니 이들은 後代의 雅樂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전통적인 經典에 들어 갈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經部에 분류하는 것보다 子部 藝術類 琴譜之屬에 분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樂緯 즉 樂緯動聲儀, 雅樂發微 등은 비록 後代人의 著作이라 할지라도 藝術로 분류한다는 것은不合理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不得已 經部에 分類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分類界限를 지어야 할 것은 吉禮의 宗廟樂과의 문제이다. 즉 宗廟樂은 朝鮮王朝 歷代 祖宗의 神主를 奉安한 宗廟의 制度·營建의 故實을 비롯하여 俗部樂懸圖등에 쓰는 樂이니 之를 토면 우리나라 英祖朝 洪啓禧 等奉教編의 國朝樂章, 樂器圖說과 같은 類는 朝章關係의 것으로 一國의 典禮에 該當되므로 史部 典禮에 分類하여야 할 것이다.

10. 小學類와 子部 家類儒

小學이 七略의 六藝略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朱子學의 觀點에서 쓴 小義

25) 機德周 “樂記”(前揭書, pp. 273-275)

26)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三十八 經部三十八 樂類敍

「沈約稱樂經亡於秦 考諸古籍 惟禮記經解 有樂教之文 伏生尚書文傳 引辟離舟張四語 亦謂之樂 然他書均不云有樂經 大抵樂之綱目具於禮 其歌詞具於詩 其鏗鏗鼓舞 則傳在伶官 漢初制氏所記 蓋其遺譜 非別有一經」

用教科書인 「小學」과, 字書로서의 「小學類」와는 確實하게 區分하여 分類해야 할 것이다. 즉 前者인 「小學」은 宋의 朱熹 撰으로 되어 있으나,²⁷⁾ 한편 朱熹가 直接 訓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門人 劉子澄이 朱子의 指授에 따라 찬술한 것이라고도 傳해진다.²⁸⁾ 著者が 어찌하던 간에 朱熹時代에 性理學의 인 觀點에서 小儀用 教材로 訓찬한 것만은 틀림없으므로 訓蒙用 漢字 教習書로 볼 수 없는 바도 아니나, 그 보다는 性理學派의 說로서 處理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므로 이는 子部 儒家類에 分類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예다.

그러나 小學類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六藝의 하나로서 六書를 가르치고자 「史籍」·「蒼頡」·「急就」等과 揚雄 및 杜林의 「訓纂類」를 漢書藝文志의 六藝略에 列入²⁹⁾시키고, 爾雅가 十三經에 編入됨에 따라 더욱 그 위치가 굳어졌다. 이는 七略 이후 많은 書目에서 단독 類門으로 설치되었는데, 舊唐書經籍志에서는 새로이 詮訓를 一類로서 설정하여 小學과 詮訓 2類가 되더니, 遂初堂書目에서는 小學類를 文字와 聲韻으로 나누었으며 四庫全書에 와서 비로소 詮詁, 字書, 韻書로 세분되었다.

訓詁之屬은 詮詁書를 가르키는데 이에서 詮은 語義에 따라 풀이하는 것, 詮는 옛 말(古言)을 現在 쓰여지고 있는 말(今言)로 풀이하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 漢字의 字義 풀이를 主로 한 一種의 옛 字典이다. 이를테면 宋 鄭樵撰의 爾雅註 三卷, 漢 揚雄撰의 方言 十三卷, 漢 劉熙撰의 釋名 八卷, 魏 張揖撰의 廣雅 十卷, 唐 顏師古撰의 匡謬正俗 八卷, 宋 陸佃撰의 埤雅 二十卷, 明 朱謀埠撰의 駢雅 七卷등이 이에 속한다.

字書는 字形과 造字에 관한 解說을 主로 한 옛 字典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例로는 漢 史游撰의 急就章 四卷, 漢 許慎撰의 說文解字 三十卷, 唐 顏元孫撰의 干祿字書 一卷, 唐 唐元度撰의 九經字樣 一卷, 宋 蔡機撰의 漢隸字源 六卷, 宋 李從周撰의 字通 一卷, 元 戴侗撰의 六書故 三十三卷

27)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九十二 子部二 儒家類 「小學集註 六卷」解題

28)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 1966. p.52.

29) 班固, 漢書藝文志, 六藝略 小學十家 및 後敍 參照

등을 들 수 있다.

韻書는 今韻, 古韻, 等韻으로 나누었는데 金나라때에 이르러 等韻은 今韻에 합해졌고, 南宋에 이르러서는 古韻 역시 今韻에 합쳐 졌으며 清朝에 와서는 等韻과 古韻이 합해져 3類를 구분할 수 없어 다만 時代 차례로 통하게 되었다.³⁰⁾ 이는 韵順으로 音과 韵의 表示를 爲主로 한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簡略한 字義를 겸한 것도 있으니, 그 예로서 宋 吳棫 撰의 韵補 五卷, 宋 楊伯昭 撰의 九經補韻 一卷, 金 韓道昭 撢의 五音集韻 十五卷, 明 洪武中 奉敕撰의 洪武正韻 十六卷, 明 楊慎 撢의 古音略例 一卷, 清 顧炎武 撢의 韵補正 一卷과 우리나라의 것으로 申叔舟 等奉命撰의 東國正韻, 正祖 御定의 御定奎章全韻, 純祖朝 李景羽 築輯의 王集韻考 등을 들 수 있다.

N. 結 言

이상의 叙述한 바를 要約해서 結論으로 삼으면 東洋의 전통적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經部의 展開過程은 다음과 같다. 최초의 書目이었던 七略에서 六藝略으로 비롯되었고 이것이 七志에서는 經典志로 改稱과 동시에 史記와 雜傳이 첨부되었다. 그以後 經部의 內實은 晉나라 荀勗의 中經簿를 토대로 엮은 中經新簿에 이르러 甲·乙·丙·丁·部의 次序中 甲部로 位置하게 되었다. 그러나 經部의 名稱과 그 骨格은 隋書經籍志에 이르러 확립되었고, 그 후 各史 藝文志 또는 經籍志를 비롯한 官私撰書目에서 그 內容이 增補改編되면서 四庫全書總目에 이르러 10種으로 細分 展開되었다.

經部의 性格을 特徵 짓는다면 王道中心의 經學을 基本으로 하는 著述을 비롯하여 그에 준하는 著作 四書 그리고 이 經學으로 入門하는 基礎인 六書를 가르치기 위한 小學類가 포괄되어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基本 部門으로 구실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諸類屬間의 分類에 있어서는 가름이 어려운 易類와 子部 術數類 및 道教類, 書類, 詩類, 禮類와 史部 政書類 典禮之屬, 春秋類, 孝經類와 史部 傳

30) 四庫全書總目提要 卷四十二 經部 四十二 小學類三 後敍.

記類 및 子部 儒家類, 五經總義類, 四書類와 子部 儒家類, 樂類와 子部 藝術類, 小學類와 子部 儒家類의 관계 등 10개 문제에 대하여 그 내용의 性格과 分類 限界를 論及하였다.

<參 考 文 獻>

- 1) 班固 “漢書藝文志”, 香港, 太平書局, 1963. 影印.
- 2) 長孫無忌 等撰, “隋書”, 臺北, 開明書店, 1961, 影印.
- 3) “中國의 古典 100選”, 서울, 東亞出版社, 1978.
- 4) 王雲五 主持 “四庫全書總目提要”, 臺灣, 4卷, 1965.
- 5) “二十五史”, 臺北, 開明書店, 1961.
- 6)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57, 103p.
- 7)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上, 1970, 208p.
- 8) 許世瑛 編 “中國目錄學史”, 臺灣, 華岡出版有限公司, 1981, 211p.
- 9) 李載喆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研究” 省谷論叢 第7輯, pp. 580~598.
- 10) 李正垠 “四部分類法의 史的 考察”, 梨大教育大學院, 1984, 71p.
- 11) 李正熙 “四部分類法의 成立過程”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圖書館 學科, 1984, 60p.
- 12) 任昇洋 “韓國 十進分類法의 東洋學 關係項目의 改訂에 관한 研究”, 1984, 93p.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圖書館 學科, 1984, 93p.
- 13) 千惠鳳 “史部 分類에 대한 諸問題” 한국비브리오 창간호 pp. 125~156.
- 14) 拙稿 “子部 分類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 第8輯, pp. 129~156.